

제 445 호

1974. 5.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배

- 제 844 호 :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배상계정조배 3
- 제 845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의조배상계정조배 4
- 제 847 호 : 서울특별시발나루에대한 농지석과쇄면제에 관한 특별조배 6

◎ 규 칙

- 제 136 호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8

◎ 도 시

- 제 5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및 지적승인 22
- 제 57 호 : 도시계획아동공원명칭변경 23
- 제 58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24

◎ 공 고

- 제 85 호 : 공인신조사항공고및 개설안내공고 25
- 제 86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일부변경공발공고 28
- 제 8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발공고 29

◎ 사 명 3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계**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가스공급규칙을 개정하려는 의의 불
포함다.

1974. 5.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조 제 844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규칙개정조

서울특별시가스공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공급의종지"라 함은 가스사
용자들의 건설에 의한 가스공급
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0. "공급의종지"라 함은 특별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
한다.

제16조의 2항중 "중지 또는 정지된
고 그 사실을 증거할수있다"를 정지
지 또는 정지할수 있다. 이때 시정
은 그 사실의 증거도 진하여 증명
수있다"로 하고, 동조의 제3항을 다
습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용자들이 전 2항의 규정에의한
공급의종지 또는 정지를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별첨수수료 300원을 지불
하여야 한다.

별첨을 각각 별첨의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 **금** **표**

(표준열량 7,000 K cal)

구	1개월 기본요금		초과사용요금		비
	기	본	사	비	
분	본	요	용	당	표
단	월	금	량	단	
가	10	650 원	기준예정사용량	45 원	
사	일		25 리터까지		
용			기준예정초과사용량	75 원	

별표 2 **요 금 표**
 (표준요금 24,000Kw)

구분	1개월 기본요금		초과 사용 요금		비고
	기본량	기본요금	사용량구분	비율단가	
가정용	3kw	690원	기준예정사용량 7kw까지	230원	
			기준예정초과사용량	265원	

별표 2 **용 구 손 료 표**

종 목	요 금
가스 - 배 타	개 당 월 150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
 자문위원회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보한다.

1974. 5. 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 845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의조례중개정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18. 안전대책 분과위원회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
 특별시 주택계획관리구역내 산물에 대
 한 시책외개, 면적 및 분할일부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5. 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 846호

서울특별시주택계획관리구역내 건물
 이의한시생부해면제및불
 균일과세해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불량건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미관

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보호와 신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내에 신축되는 신물에 부과되는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대상) 건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주택개발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부장관이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신축되는 신물(부대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1. 취 득 세

신물 준공후 최초 입주취득자

2.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
동 시설세

불량신물을 최초로 개량 취득한
소유자

제3조(경감율) 건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전액,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정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경감기간) 건조의 경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 득 세

신물이 준공된후 최초 입주취득
자에게 1회

2.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
동 시설세

신물이 준공된후 최초로 개시되
는 날기로부터 3년간

제5조(사무처리외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경감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을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의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④(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이전에 주택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개발 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제 470호 73.12.

1) 한구역내의 건축물중 1973년 12월 1일 이후에 건축된 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건축된 것으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밤나무에 대한 농지세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5. 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47호

서울특별시밤나무에 대한 농지세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밤나무 조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밤나무를 식재한 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중 밤나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 20일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새마을공동 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5. 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48호

시흥특별시시무위원회의 의결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산
 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
 을공동(농수)생산조합과 마을공동
 수확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
 여 지방발전 제 1차 계획의 구
 령에 의거 고령면제와 같은 사할
 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 위촉성,
 자물자물, 면적제, 직상제, 농지제,
 노조제 등 및 수확사업에 관하여
 마를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농수)생산 및 이의
 위촉
2. 마을공동(농수)생산으로부터
 생도 수입금
3. 마을공동사업으로 얻어진 소득
4. 마을공동사업 경영을 위하여
 부담 경비

제 3 조 (사무지회의위원) 제 2 조의 규정
 에 의한 조항제와 같은 사항은 면
 일부정당에서 위임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고 조항제와 같은 사항을

시흥특별시의정위원회에 따라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매년 남기계산일 20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로 구청장 의한 조항제 신
 청을 받은후에는 지체없이 조사위원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할의
 규정의 불구함도 제 2 조의 규정의
 의한 조항제 면제신청을 할 수 있
 단 조항제 규정으로 부가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하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규 칙

시흥특별시시무위원회의 의결
 이에 공포한다.

1974. 5. 7

일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각별표를 별지의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규칙제 1366호

부 칙

서울특별시사무위원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1974년 5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원규칙중 다음과

시행한다.

별 표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 임 기 관	근거및적용법규
문화공 보 실	1. 공연자 등록	내부위임	구청장및출장 소 장	공연법 제 3조
	2. 공연자등록사항변경신고	•	•	•
	3. 공연자등록증의교부및처고부	•	•	공연법제 4조 제 5조
	4. 공연자등록증 갱신	•	•	공연시행법 제 7조
	5. 공연자경영대리인신고	•	•	공연법 제 21조
	6. 공연장의 일감	•	•	공연법 제 11조
	7. 각본심사	•	•	공연법제 14조 제 2항 공연시행법 제 51조
	8. 주지 (또는 대표인원) 위임등록	•	•	문화재심판위원 제 9조 공연시행법 제 5조
	9. 불교단체 (사찰) 등록	•	•	문화재심판위원제 6조 공연시행법 제 4조
	10. 출판사 (신문, 변경) 등록	•	•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규칙안정법제 5조
	11. 인쇄소 (신문, 변경) 등록	•	•	•

실과별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처용법규
인사과	1. 4 급이하공무원의 임용	내부위임	구청장및출장소장	지방공무원법제 6 조
시민과	1. 공 연 신 고	권한위임	"	공연법제 14 조 동법시행령제 50 조
	2. 공연장권람료인가	내부위임	"	공연법제 15 조
	3. 공연장특별요금인가	"	"	"
	4. 간호원·조산원면허신고 접수	"	보건소장	의료법시행규칙제 1 조·제 2 조
관계과	1. 용도폐지된 사유재산(불용재산)의 철거 및 자재의 처분	"	구청장및출장소장·보건소장·수도사업소장	지방재정법제 61 조
	2. 잡종재산의 처분	"	구청장 및 출장소장	지방재정법제 67 조의 2 동법시행령제 63 조
	3. 공용재산의 처분(사용허가)	"	구청장·출장소장·보건소장및수도사업소장	지방재정법제 57 조제 2 항·동법시행령제 62 조
	4. 사유재산(불용재산·잡종재산)의 매각	"	구청장 및 출장소장	지방재정법제 61 조제 4 항·제 57 조의 2
	5. 사유재산불타증 교부	"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6. 임의로 및 매각대금 수납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 65 조·제무회계규칙 제 136 조·제 136 조의 2
보건행정과	1.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위임	"	"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 적용범위
보 건	1) 숙박영업허가	권한위임	보건소장	숙박업법제 4조
행정과	2) 숙박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	"	"	동법시행령제 2조
	3) 숙박업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	"	"	동법시행령제 4조
	4) 숙박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	"	숙박업법제 8조
	5) 숙박업시설의 개수 명명	"	"	숙박업법제 7조제 2항
	6) 숙박업시설의 등급결정	"	"	숙박업법제 3조제 2항
	7) 숙박업소의 보고 및 검사	"	"	숙박업법제 7조제 1항
	2. 목욕장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1) 목욕장업허가	"	"	공중목욕장법제 4조
	2) 목욕장업허가사항의 변경	"	"	동법시행령제 2조
	3) 목욕장업허가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	"	"	공중목욕장법제 4조
	4) 목욕장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	"	공중목욕장법제 8조
	5) 목욕장의 시설등급 결정	"	"	공중목욕장법제 3조제 2항
	6) 목욕장업소의 보고점	"	"	공중목욕장법제 7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적용법위
보건 행정과	사 및 계수명령 3. 이·미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1) 개설허가및이전허가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3) 폐지 및 휴업신고 4) 업소의 폐쇄처분 및 개설허가의 취소 5) 업소의 등급사정 6) 업소의 검사 및 계 수명령 7) 이·미용사의 건강진 단명령과 업무정지명령 8)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9) 영업소이외의 장소에 서의 영업행위의 인정	권한위임	보건소장	이·미용법제 8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제 20조의 2 동법시행규칙제 9조 이·미용법제 14 조 이·미용법제 9조제 2항 이·미용법제 12조 이·미용법제 6조·제 7조 이·미용법제 7조 이·미용법제 10조단 서, 동법시행령제 2조
보건 예방과	1. 마약법제 7조제 4호내 지 제 6호의 마약취급 자판허 2. 마약법제 7조제 4호내지 제 6호의 마약취급자판허 등록사항변경신고 3. 마약취급자단속 4. 마약구입서 (판매서) 의 교부 5. 마약의 양도승인	내부위임		마약법제 7조 마약법제 51조 마약법제 13조 마약법제 16조

실무분	위 입 사 무 명	위 입 부 문	수 입 기 분	규 칙 및 규 칙 제 구	
보 건 예 방과	6. 제 1종·제 2종 및 제 3종 중견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권한위원	보 건 순 장	전월 예방접종 30조 제 1조	
	7. 제 1종·제 2종 중견염병의 예방	"	"	전월 예방접종 20조	
	8. 제 1종·제 2종 중견염병 예방시설 의 설치 및 관부, 기타 필요간조치	"	"	전월 예방접종 23조 제 28조	
	9. 제 1종·제 2종 중견염병 환자 가 유 에 대한 방역조치	"	"	전월 예방접종 37조	
	10. 제 1종·제 2종 중견염병의 예방조치	"	"	동월제 39조·제 43조	
	11. 제 1종·제 2종 중견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	"	동월제 42조	
	12.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	"	"	기생충예방특별법 제 6 조	
	아 동 부	1.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가	"	"	"
		1) 설치인가	비부위원	구 설 장 및 활 장 소 장	아동복지법 제 17조
		2) 폐지 또는 정지신청	"	"	동법 시행령 제 11조
		3) 명칭·주소지·대표자 또는 사업부처 변경인가	"	"	"
		2.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인 아동의 후견인지정	"	"	아동복지법 제 13조 보 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의 규함법 제 2조
3. 학과 및 유아시설의 아동양육에 수반한 비용 의 보조		권한위원	"	아동복지법 제 21조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아동과	4.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와 사업의 정지처분	권한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동법제 26조
	5. 요보호아동에 대한 인 소허가 및 수송	"	아 동 보호소장	동법제 9조
	6. 입소아동의 퇴·소허가	"	"	동법제 11조
부녀과	1. 결혼예식장영업허가 및 취소	"	구청장및 출장소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11조
	2. 장례식장영업허가 및 취소	"	"	"
	3. 장의사업업허가 및 취소	"	"	"
	4. 결혼상담소허가 및 취소	"	"	"
사회과	1. 사회복지법인의 업무및 재산상황검사 및 감독	"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제 1항
청소2과	1.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	"	보건소장	오물청소법제 12조 동법시행규칙제 15조
	2. 액상폐기물 정화조의 설치 준공검사	"	"	"
환경과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내부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공해방지법제 4조
	2. 배출시설설치허가사항 변경	"	"	"
상징과	1. 물가단속	권한위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5조·제 10조
	2. 협정요금위반단속	"	"	"
	3. 가격표시단속	내부위임	"	동법시행령제 6조
	4. 계량거정기검사 (복수 계량기 제외)	"	"	계량법제 30조

실과명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공업과	1. 중소기업체증명	내부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민원사무처리규정제5조
	2. 원자재소요량증명	"	"	민원사무처리규정제2조
	3. 전기기술자변경이동신고	"	"	전기공사업법제13조 제1항·동법시행령제 8조제2항
	4. 공장등록	권한위임	"	공장등록시행규칙제2조
	5. 공장등록변경신고	"	"	공장등록시행규칙제6조
	6. 수출공산품생산기업체 신고	내부위임	"	민원사무처리규정제8조 수출(군납포함)생산기 업체신고규정(상공부고 시제 3014 호)
	7. 품질표시상품의 관리	"	"	
	1) 품질표시명명	"	"	품질관리법시행령제18 조제1항
2) 품질표시명명위반상품 판매 및 진열금지	"	"	동법시행령제18조 제2항	
3) 품질검사불합적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명	"	"	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3항	
4) 품질표시상품의 판매 및 진열금지 해제	"	"	동법시행령제18조 제4항	
5) 품질표시상품의 검사 지정상품조사	"	"	동법시행령제18조 제5항	
8. 영세기업체정자금 융자 추천	권한위임	"	중소기업체재정자금운 영요강	
연료과	1. 고압가스제3종제조업 허가	내부위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연료과	2. 광업사업안인가	내부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민천사무처리규정 제 2 조
	3. 광업착수유예인가	"	"	광업법제 42 조제 2 항 동법시행령제 3 조
	4. 광업제속신고	"	"	민천사무처리규정 제 2 조
	5. 광업제인가	"	"	"
	6. 광업착수신고	"	"	"
	7. 광업사업안변경인가	"	"	"
	8. 광업사무소변경 신고	"	"	"
	9. 광업출원인 명위변경 신고	"	"	"
	10. 광업출원인 주소변경 신고	"	"	"
	11. 광업출원인 명의 승계 신고	"	"	"
	12. 공동광업출원인 대표 자변경 신고	"	"	"
	13. 광업대리인선·해임신고	"	"	"
	14. 생산할보계출	"	"	"
	15. 고압가스제조업제 4 종 (후회온가스) 허가	"	도시가스 사업소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 조
	16. 도시가스시공업자지정	"	"	가스공급조례제 5 조
	17. 공급지역의 공급관 및 가정 관공사	"	"	"
	18. 고압가스용기 검사	권한위임	연료시험소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3 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농경과	1. 축박수의사의 입면	내부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수의사법제 19 조
	2. 기업목축업등록	"	"	조치법제 2 조제 2 항 동법시행령제 17 조
	3. 동물약품취급신고	"	"	동물약품취급규칙제 14 조
	4. 어선소유 신고	"	"	어선신고요강제 5 조내 저제 9 조
	5. 농경지개간지조사	"	"	농경지조성법제 5 조
	6. 농경지개간허가권 양도 허가승인	"	"	동법제 17 조
	7. 농경지개간허가권 상속 신고	"	"	"
	8.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권한위임	"	주요농작물종자법제 4 조
	9. 부정농약단속	"	"	농약관리법제 4 조·제 14 조
	10. 축산물의 검사	"	가축위생 시험소장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7 조
	11. 가축전염병방지에 관 한 권한			
	1)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 약육 및 투약명령	권한위임	구청장및 출장소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제 1 항
	2) 검사·주사·약육 및 투 약실시증명서 교부	"	"	동법제 5 조제 2 항
	3) 가축에 대한 소독 및 철소지시	"	"	동법제 6 조
	4) 감염가축의 격리조치	"	"	동법제 8 조
	5) 감염가축의도살처분명령	"	"	동법제 10 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일거품	근거및처용법규
농정과	12. 종속검사에 관한 권한	권단위임	구 청 장 및 출장소장	
	1) 종속검사 실시	"	"	축산법제 3 조
	2) 종속표시 및 종속증명서 교부	"	"	동법제 4 조
	3) 종속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	"	동법제 5 조제 1 항
	4) 후보종속지정 및 동증명서의 교부	"	"	축산법제 9 조
	5) 종속검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	"	동법시행규칙제 4 조
	6) 종부의 제한	"	"	축산법제 6 조
	7) 보호종속의 지정	"	"	동법제 8 조
	8) 모축의 거세 명령	"	"	동법제 10 조
	9) 부화업자 등록	"	"	동법제 12 조
10) 종난의 검사	"	"	동법시행규칙제 26 조	
양정과	1. 양곡매매업의 영업정지 처분	"	"	양곡관리법제 22 조 제 1 항
	2. 영업시설의 양도 승인	"	"	동법제 15 조의 3
	3. 영업시설의 임대 승인	"	"	"
	4. 영업시설의 변경 승인	"	"	"
	5. 영업폐지 신고의 접수	"	"	"
	6. 양곡유통단속	내부위임	"	농수산부고시제 2495 호 제 2463 호
농지과	1. 토석채취허가	"	"	사림사업법제 14 조
	2. 입야기간허가 및 준공검사(3,000명 이내)	"	"	산림법제 24 조 입산물 단속에관한 법률제 2 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위임구분	수임기관	근거및 적용법규	
녹지과	3. 사방지내에서의 모든 행위 제한	내부위임	구청장 및 소장	사람사법제 14 조	
	4. 그린벨트구역내의 각종 행위단속	권한위임	"	도시계획법제 4 조 제 1 항	
	5. 배종의 구제 및 예방	"	"	산림법제 51 조	
	공원과	1. 공원점용(사용) 허가	내부위임	"	공원법제 16 조, 공원조례제 2 조
		2. 공원내 상시영리행위 사용(사진) 허가	"	"	동조례제 2 조, 제 4 조
3. 이석불능가로수벌채승인		"	"	가로수보상규칙제 2 조	
4. 묘사가로수벌채승인		"	"		
도시계획과 건축과	1. 사도개설허가	"	"	사도법제 4 조	
	1. 다음에 재기하는 건축법상 권한(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5층이상인 건축물과 미관지구내 및 특정가구청비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건축법제 2 조제 15 호 나목, 제 5 조, 제 6 조 제 3 항,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제 2 항 제 8 조, 제 9 조의 2 제 2 항 제 42 조제 1 항제 1 호, 제 4 호 및 동조제 4 항,	권한위임	"	건축법제 4 조제 2 항 동법시행령 제 5 조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수입기관	근거및적용법규
건축과	제 43 조와제 47 조제 2 항의 급경사에 의한 권한의 전부	권한위임	구 청 장 및 출 장 소 장	
	2. 연면적 1,000㎡이상 및 5 층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마포지구 내 특정가구정비지구는 제외한다.)	내부위임	"	건축법제 5 조
주택과	1. 시영주택의 유지관리	"	"	시영주택관리조례제 17 조
	2. 시영주택분양계약 체결	"	"	동조례제 7 조
운수과	1. 창고업의 허가	"	"	창고업법제 3 조, 동법 시행령제 3 조
	2. 자동차운송알선업허가 (물동량소계, 화물, 부덕방, 이삿짐 기타)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 49 조, 동법시행규칙 제 31 조, 제 32 조
운수과	1. 3 급자동차정비사업의 지도감독			
	1) 3 급자동차정비사업의 경영허가	권한위임	"	도로운송차량법제 44 조제 2 항
	2) 3 급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	"	동법제 44 조제 6 항
	3) 3 급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허가	"	"	동법제 44 조제 8 항
경찰과	1. 승기검사	내부위임	승 기 관 소 리 장	승기관리법제 12 조, 승기의분의및 등록에 관한규정제 2 조

실과별	위 임 사 무 명	위 임 구 분	수 입 기 관	근 거 및 적용 법 규
시 관 리 과	1. 도로상의 지장물정리	내부위임	구 청 장 및 출 장 소 장	도로법제 48 조
	2. 아취및선전탑설치인가	"	"	도로점용토정수조례제 3 조
	3. 도로, 하천공유수면점 용토 감면신청	"	"	공유수면관리법제 7 조 도로점용토정수조례제 5 조 하천점용토, 정수조례제 2 조
	4. 비관리청의 도로공사허가	"	"	도로법제 40 조
	5. 비관리청의 하천공사허가	"	"	하천법제 23 조
	6. 도로보수 및 부속물 의 설치유지관리	"	"	동법제 24 조
	7. 하천점용허가	"	"	하천법제 25 조 동법시행령제 18 조
	8. 구거점용허가	"	"	공유수면관리법제 4 조
	9. 도로점용허가	"	"	도로법제 40 조 동법시행령제 24 조
	10. 공유수면점용허가	"	"	공유수면관리법제 4 조
	11. 하천공작물신축허가 (지방하천, 준용하천)	"	"	하천법제 26 조
	12. 공유수면매립면허 (지방하천, 준용하천)	"	"	공유수면매립법제 4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13. 하천유지허가(지방하 천, 준용하천)	"	"	하천법제 23 조
	14. 공유수면매립권력의무 양도허가(지방하천, 준 용하천)	"	"	공유수면매립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29 조

신규별	위임수령	위임구분	수령기관	근거및비유령구
신규	15. 공영수원개발공사에서 기장면기원가(지반하천, 관측하천)	내부위임	수령기관 수령소장	공약제 10조, 공약시 행령제 16조
	16. 유모도로관리원일사 관리	"	"	유모도로관리규칙제 6 조
	17. 유모도로공영로경수 및 관리	"	"	유모도로공영로경수 조칙제 3조
포괄과	1. 보도감확승인	"	"	도로법제 40조
	2. 도로감확승인(자원포함)	"	"	"
	3. 보도 및 콩크리트포장 도로유지관리와 감확허가 및 부구	권한위임	"	"
하수과	1.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	하수도법제 24조
	2. 기성하수도에 의한 보수 및 유지관리	"	"	동법제 7조
	3. 계량 유지관리	"	"	동법제 10조
업무과	1. 상수도 시공업허가	"	수도사업소장	급수조례제 12조
급수과	1. 배수설비설공사	"	"	공조례제 11조
	2. 노후관 교체공사	"	"	"
	3. 노후관통합 및 계량 공사	"	"	"

고 사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 호

도시 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 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하였던 도시 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국 도시 계획과와 관할 구청 (출장소)
시민 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5. .

서울특별시 장

1. 로선 조서 별첨

2. 관계 조서 별첨

별첨 : 도면 표시와 갑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종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09	제기동 341		제기동 341			
변경	"	3		6	114	"				기존 도로 활용 일부 위치 변경	
기정	"	3		6	155	화양동 151-26		화양동 151-26			
변경	"	3		6	156	"				동일 소로 부지 내에서 토지 이용 목적 고려 위 치 일부 변경	
기정	"	1		10	230	창동 524		창동 547-24			
변경	"	1		10	230	"				제방선 변경에 따 라 계획선 조정	
기정	"	3		6	140	창동 547-1		" 537			
변경	"	3		6	150	" "		" "			
기정	"	3		6	160	" 525-1		" 531			
변경	"	3		6	170	" "		" "			

구분	종류	면적	번호	주원	연장	기	경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70	창동 525-1		창동 527			
변경	"	3		6	180	"		"		계상선변경에 따라 계획선조정	
기정	"	2		8	340	신림동 668-9		신림동 668-9		폐	지
기정	"	2		8	110	영등포동 527-16		영등포동 527-18			
변경	"	3		6	150	" 285-27		"		계상도로위치변경	
기정	"	7		10	140	은수동 23-1		은수동 21-14			
변경	"	2		8	140	"		" 21			
기정	"	3		4	266	광장동 394-4		광장동 355-4			
변경	"	3		6	270	"		"		기존도로 활용 일부위치변경	
기정	"	3		6	140	농동 230-3		농동 427			
변경	"	4		4	120	"		" 431-3		지구와일부폭원조정	
기정	"	3		6	190	대조동 68-213		대조동 88-5			
변경	"	3		6	190	"		" 88-7		계상도로위치변경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도시계획 아동공원 명칭변경

1. 당시 도시계획 아동공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가. 도시계획 아동공원 명칭 변경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변경
고사한다.

1974. 5. 7.

서울특별시 장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아동공원	보문아동 공원	동대문구 보문동 7가 108번지	2,013	신설제 3 아동공원을 보문아 동공원으로 정식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2 호 (73. 12.10) 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 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5.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사당동 199-1 의 6 필지
2. 사업의종류명칭 : 서울신남성국민학교
3.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4. 사업규모 : 3,713 명.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1974.5. ~ 1974.12.30.
6.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 (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 조서 및 지번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시내 관악구사당동 195-1	전	150 명	서울특별시 가압류
195-2	전	202	
198	담	702	
199-1	전	1,247	
199-2	담	405	
201	담	327	
202-1	담	680	
계		3,713 명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설명

소	세	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	성 명	관계인의 주소 설명
시대	관악구	사당동 195-1	성북구 정농동 266-318	이 광 권	
		195-2	266-38	박 효 순	서울특별시 가암동
		198	용산구 한강로 2가 391	김 학 규	
			서대문구 영랑동 41-31	우 제 화	
		199-1	중구 도동 2가 92-5	나 순 환	
		201			
		202-1	관악구 사당동 241	김 기 봉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85 호









공인신조사랑 공고
및 개설공고안내









서울특별시 산하 관악구 및 도봉구
수도사업소 중설에 따라 관악구 및
도봉구의 수도사업소장인, 분임경리관

분임지출원인, 분임수입원인, 수입금입
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국면거주
조합장인,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작인하였
기 공고함.

1974. 5. 1.

서울특별시 장

순위	인명	도봉구수도사업소	관악구수도사업소
1	사업소장인		
2	분입경리부인		
3	분입지출원인		
4	분입수입원인		

순위	인명	도봉구수도사업소	불암구수도사업소
5	수입박수인출담원인		
6	부인박복출담원인		
7	국민의속 조합장인		
8	유가증권 위탁공무원인		

도봉구 및 관악구 수도사업소 개설 업무

도봉구 및 관악구 수도사업소를 다설과 같이 개설하고 74. 5. 1부 이 업무를 위임하게 되었음과 아울러 상부구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974. 4. 30

서울특별시

- 1. 개설일자: 74. 5. 1
- 2. 소재지
- 가. 관악구수도사업소

(1) 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42-25번지 (관악구청남쪽 약 200미터 지점)

소장실관리제	69-9315
민원신고센터및공무제	69-8597
화장실, 2개	69-9869
구내전화	75-7931~9 (교환)

관악
나. 도봉구수도사업소
(1) 소재지: 도봉구미아동 58595

관

소장실관리제	93-7649
화장실, 2개	94-1837
공무실, 2개	93-8192
민원신고센터	93-3000

다. 상부구수도사업소 (이전장소)
(1) 소재지: 상부구동소문동로가 11, 12, 13번지

(2) 관 화 번 호

소장실	94-5431
관리제	94-5432
화장실, 2개	94-5433
공무실, 2개	94-5434
민원신고센터	94-5435

서울특별시공고제 86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원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시흥, 김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원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55조 및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다.

2. 환경계획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74. 5. 2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시흥, 김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봉천동, 사당동, 신대방동, 일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독산동, 시흥동, 신도림동, 염창동, 등촌동, 내발산동 일부지역
3. 변경필지수 : 85필지
4. 변경표시 및 도면 :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8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2439호 (66.5.21)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9호 (74.2.26)로 시설 결정권 서울특별시동부간선도로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의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는 당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5.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 가. 사업시행지위치 :
상동구근자동, 송정동, 연북동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부간선도로공사 (상봉동~화양동간)
- 다. 사업규모 :
도로폭 30미터, 연장 5,250 미

<p>리, 교량 (폭 26미터, 연장 9.6 미터) 라. 사업자 : 서울특별시청 마. 착수 및 준공예정</p>	<p>74. 5. 1 ~ 74.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 할로 천 : 별첨 명세 아.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와 토지수용권, 제 3 조 제 3 호와의 관계 인 주소 성명</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성동구 관자동				135의3	답	76	중무로 2가 82	서울여자 대학	
2	"				130 ~ 66	대	50	보문동 3가 168	송완조	
3	"				127 ~ 14	전	617	신교동 6-20	권갑조	
4	"				126 ~ 5	대	142	신교동 6-2	:	
5	"				125 ~ 268	"	36	필동 2가 134-9	송지배	
6	"				125 ~ 267	"	258	신당동 251-82	홍병희	
7	"				125 ~ 271	전	115	군자동 123	진중근	
8	성동구 송정동				1 ~ 112	대	23	전충동 21-7	윤경숙	
9	"				1 ~ 113	전	155	군자동 123	진중근	
10	"				1 ~ 114	"	11	성수동 2가 456-282	김영준	
11	"				1 ~ 115	"	130	군자동 124	김소산	
12	"				1 ~ 116	대	54	삼천동 60-21	이실확	
13	"				1 ~ 117	"	9	이왕직	장판	
14	"				1 ~ 118	전	4			
15	"				1 ~ 119		2			
16	"				2 ~ 2		136		신덕용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7	송정동				4~	3		45 송정동 4	한수동	
18	"				5~	2		32 송정동 5	한경모	
19	"				72~	184		22 국		
20	"				73~	89	전	13 송정동 72	김천식	
21	"				73~	970	"	33 필동 74	정경남	
22	"				73~	971	"	55 송정동 72	김권식	
23	"				7~	2	대	22 송정동 7	전철수	
24	"				8~	2	"	65 송정동 8	이순봉	
25	"				9~	2	"	2 송정동 8	"	
26	"				10~	10	"	4 송정동 10-3	박영애	
27	"				10~	11	"	48 송정동 10-3	"	
28	"				10~	12	"	24 도선동 69	이영자	
29	"				12~	2	"	80 "	"	
30	"				15~	2	"	2 동부이천동 301-7	권영애	
31	"				15~	6	"	" 미아동 619-7	조천용	
32	"				18~	2	"	254 필동 76	손주식	
33	"				20~	4	"	131 송정동 2	신덕용	
34	"				20~	5	"	255 군자동 100	방학진	
35	"				21~	83	"	9 군자동 124	김소산	
36	"				28~	6	"	50 읍지로 2가 148	장남섭	
37	"				28~	8	"	7 남산동 16	한필덕	
38	"				70~	55	"	8 하왕십리 106	동양정밀 공업 Co	
39	"				70~	56	"	8 "	"	
40	"				70~	57	"	125 하왕십리 106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판계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41	송정동				70~58	대	193	하왕십리 106	중앙정밀 공업 Co.	
42	"				70~60	"	182	송정동 70-20	김기윤 중앙정밀 공업 Co.	
43	"				70~61	"	334	하왕십리 106	중앙정밀 공업 Co.	
44	"				70~63	"	200	"	"	
45	"				70~64	"	22	"	"	
46	"				70~65	답	347	상왕십리 436-5	문성인	
47	"				68~80	"	228	화양동 94	문희운	
48	"				68~82	"	126	"	"	
49	"				68~83	건	88	상왕십리 436-5	문성인	
50	"				73~972	"	28	송정동 39-2	신태원	
51	"				73~973	답	154	국		
52	"				73~974	대	3	홍익동 262-1	민종현	
53	"				73~975	"	4	화양동 168-6	모상일안	
54	"				73~976	"	0.7	홍익동 262-1	민종현	
55	"				73~977	"	4	송정동 73-22	이덕희	
56	"				73~978	"	1	송정동 73-511	황홍식	
57	"				1~3	도	3	이왕직장판		
58	"				1~4	"	18	송정동 1	손명순	
59	"				1~5	"	10	이왕직장판		
60	"				1~5	"	140	아현동 622-15	김재홍	
61	"				1~19	"	64	"	"	
62	"				1~20	"	20	이왕직장판		
63	"				1~21	"	6	송정동 38	추부녀	
64	"				1~22	"	1	이왕직장판		
65	"				1~23	"	14	"		
66	"				1~39	"	7	"		

순위	소재지	분할전 도시			분할후 도시 (수용액량)			소 수 자		비고
		지번	지목	적적	지번	지목	적적	수	소	
67	송정동				1~60	건	1		이왕리강변	
68	"				1~51	도	1		"	
69	"				1~73	"	4		"	
70	"				1~96	"	44	송정동 3가 24~9	한철환	
71	"				3	"	155	월호로 1가 18	정우리	
72	"				11	"	77	건물용 558	김재현	
73	"				13	"	48		김일봉	
74	"				19	"	21		정학수	
75	"				20~ 2	"	188		신계용	
76	"				65~ 1	"	61	상광삼리 436-5	문성언	
77	"				68~ 25	"	55		"	
78	"				68~ 31	"	43	화양동 116	박정숙	
79	"				68~ 32	"	3		"	
80	"				70~ 53	"	118	송정동 70-78	김이수	
81	"				70~ 33	"	25	송정동 10	정서환	
82	"				72~ 33	"	5	동양초식수사	최사	
83	"				73~517	"	83	동리동 262-1	김광현	
84	금곡동				128~ 2	건	17	송정동 72	김영선	
85	"				133~ 8	대	26	평당동 317-510	손수옥	
86	"				134~ 6	담	1,053	차울부원사		
87	"				187	도	65	불광동 231	장우성	
88	"				194~ 4	건	12	금곡동 325	손세기	
89	"				186~ 3	담	296	국곡동 174	장진성	
90	"				193~ 7	건	59	"	"	
91	"				190~ 10	"	2	불광동 231	장수옥	
92	"				190~ 11	"	4	"	"	

◎ 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성 명 : 이 주 민 소 속 : 대흥동
직 명 : 지방행정서기보

본 격 : 전남보성군용치평강산리 585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6 ~ 25호

출석이유 : 징계사유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함.

출석일시 : 74. 5. 25. 10 : 00

출석장소 : 마포구 부청장실

기 타 :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일시까지 당위원회
에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할 것을
공고 합니다.

1974. 5. 10.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이 주 민 귀하

사 령

○ 1974.4.25

사 민 과 지방행정 이 순 용
서기보시보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시 민 과 근무를 명함.

감 사 과 부이사관 원 용 학
대통령비서실과전 근무를 명함.

(1974.5.1 - 1974.10.31)

1947년 5월 1일

대 통 령

○ 1974.5.3

관 계 과 지방행정 김 세 흥
서기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5.4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권 영 예
시 민 봉사실 서기
관장과 근무를 명함.

승 기 과 리 사 업 소 지 방 기 계 박 덕 용
(직위해제중) 기 사
부직을 명함.

최 대 향

지방아동복지지도원 (3급유류

상당)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아동상담소장에 보함.

○ 1974.5.6

최 계 일

지 방 투 투 기 과 시 보 에 임 함.

1 호봉을 급함.

토 목 시 험 소 물 리 과 장 에 보 함.

영 신 과 지 방 기 계 사 전 실 호

지 방 기 계 기 과 에 임 함.

2 호봉을 급함.

실 비 제 장 에 보 함.

지 하 철 본 부 지 방 전 기 사 배 인 근
전 차 과 기 사

지 방 전 기 기 과 에 임 함.

2 호봉을 급함.

김 수 제 장 에 보 함.

도 시 지 방 화 공 사 안 중 근
가 스 사 업 소 기 사

지 방 화 공 기 과 에 임 함.

2 호봉을 급함.

생 산 과 장 에 보 함.

서 대 문 병 원 지 방 간 호 사 조 예 형
기 사

지 방 간 호 기 과 에 임 함.

2 호봉을 급함.

간호과장에 포함.
 농 정 과 지방수상사 박주호
 지방수상기과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수산물계장에 포함.
 지하천분부 지방건축사 정창우
 지방건축기과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건축계장에 포함.
 종로구 지방건축사 김현국
 지방건축기과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건축과장에 포함.
 중부병원 지방간호과 이정숙
 아동병원 간호과장에 포함.
 남부병원 지방간호과 김정균
 중부병원 간호과장에 포함.
 천신병원 지방간호과 장내원
 영등포병원 간호과장에 포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과 이춘애
 남부병원 간호과장에 포함.
 근무회관 지방행정관 박국자
 성동부녀복지관장에 포함.
 성동부녀 지방행정관 박국자

동대문부녀복지관장 겸직을 명함.
 부녀 복지행정관 김진순
 양치외관장 겸직을 면함.
 아동부녀복지관장 사무원 정태복
 주택행정과 수납계장에 포함.

○ 1974.5.7

관악구 지구방행정사 이윤철
 관악구 지구방행정사 송기환
 관악구 지구방행정사 이현외
 종로구 지구방행정사 조남성
 종로구 지구방행정보정용술
 동대문구 지구방행정보박재식
 동대문구 지시방행정기김경일
 마포구 지시방행정기원윤석
 종로구 지시방행정기최경대
 성북구 지시방행정기채성탁
 성북구 지시방행정기김영가
 중도사업소 지시방행정기유실경
 자동차정비창 지시방행정기김관성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도사업소 지방행정관 금병국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관 이석기

마포구	지방행정 지서기	김태구	운수 1 과 파견 (74.5.8-74.
마포구	지방행정 지서기	박만식	11.7) 근무를 영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지서기	전영규	
용산구	지방행정 지서기	박병진	○ 1974.5.10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영함.		경북 지방토목 건설국차수와 기사보 이 위 역
도 가스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보	엄태승	서울특별시 진입을 영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영함.		지방토목기사보에 입함.
도 가스사업소	지방행정 지서기	장희봉	4호봉을 급함.
묘지관리사무소	근무를 영함.		계량 1 과 근무를 영함.
종로구	지방행정 지서기	이성구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영함.		지방보건연구원시보에 입함.
관악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재균	1호봉을 급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영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영함.
중리관리	지방행정 주사보	박우근	
양서출장소	근무를 영함.		지방보건연구원시보에 입함.
중부관리	지방행정 지서기	서상락	1호봉을 급함.
영등출장소	근무를 영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영함.
성북구	지방행정 지서기	유정걸	
영등출장소	근무를 영함.		지방보건연구원시보에 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 지서기	이현규	1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영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영함.
			신명 역
○ 1974.5.8			지방보건연구원시보에 입함.
시정개발 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	황병철	1호봉을 급함.

<p>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p>	<p>최화영</p>
<p>지방보건연구원보시보에 입함.</p>	<p>정수영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p>	<p>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p>	<p>이규섭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p>	<p>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p>	<p>이문세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p>	<p>영등포수원지사부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p>	<p>심재필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행정주사부 감사원 진출을 명함.</p>	<p>강기동</p>
<p>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입함.</p>	<p>심상원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p>	<p>김용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p>	<p>최수훈</p>
<p>1호봉을 급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p>
<p>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운명당장소 근무를 명함.</p>	<p>운명당장소 근무를 명함.</p>

<p>이 창 섭</p> <p>계방건설축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p> <p>한 무 길</p> <p>계방건설축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용산구 근무를 명함.</p> <p>김 권 만</p> <p>계방건설축기사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p> <p>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p>
--	---

시 울 투 별 시 장